

의안번호	2208422
의 퇴 인	김영진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1.
추계번호	25F114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출자·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
2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3조의3 (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등 에의 출자·인수에 대 한 과세특례)	○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중소기업·중견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내국법인이 소재·부품· 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사업 또는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 일부 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한 2년 연장 - 감면내용: (출자) 지분 취득가액의 5% 세액공제 (인수) 인수금액의 5%(중견 7%, 중소 10%) 세액공제 - 적용기한: 2025.12.31. → 2027.12.31.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3조의3 (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 대한 과세특례)	제1호: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
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 세수
감소가 예상됨(안 제13조의3)
- 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 대한 법인세
세액공제 제도는 소재·부품·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
부터 도입된 과세특례임

-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에 공동으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5%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
- 내국법인이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인수 대상 외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사업 또는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주식 등의 취득가액 또는 사업·자산의 인수금액의 5%(중견 7%, 중소 10%)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

– 2022년 말 법률개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인수대상 외국법인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이 추가됨

□ 그러나 2021년, 2022년만 감면실적이 존재하고, 2023년에는 감면실적이 없으며 정부는 2024년과 2025년에도 감면실적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- 2020년 동 제도가 신설되어 실적이 집계된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각각 145억원, 174억원의 감면실적이 발생
- 이후 2023년~2025년까지는 실적이 없거나 없을 것으로 전망

[표 3] 내국법인의 소재·부품·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·인수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실적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)

2021	2022	2023	2024(잠정) ¹⁾	2025(전망)
145	174	0	0	0

주: 1) 「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4년 감면액은 2024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따라서 2023년 이후 감면실적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세수감소 규모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 제1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- 또한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 및 인수는 기업의 개별 의사결정 사안으로 향후 추이와 규모를 전망하기 곤란한 측면도 존재함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